

[별지 제6호서식]

제33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서

【담당부서명: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】

1. 위원회명	정보공개심의회
2. 개최일시	2026. 9. 15. ~ 9. 22.
3. 개최장소	서면심의
4. 참석인원	위원 5명
5. 심의안건 <제82호>	청구인이 피청구인 일산동구청장에게 요청한 【관리인 선임신고 관련 관리 단집회 의사록 및 의결권 관련 자료】의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 심의 건임
6. 주요내용	본 심의는 아래 사유로 기각함. 청구 내용은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관리단집회 의사록 및 의결권·정족수 관련 자료로서, 청구인이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, 당사자 간 소송 및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, 특정 구분소유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, 청구 내용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함이 타당함.
7. 회의결과	“기각(부분공개)” - 심의위원 5명: 기각 4명, 인용 1명

[별지 제6호서식]

제33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서

【담당부서명: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】

1. 위원회명	정보공개심의회
2. 개최일시	2026. 9. 15. ~ 9. 22.
3. 개최장소	서면심의
4. 참석인원	위원 5명
5. 심의안건 <제83호>	청구인이 피청구인 덕양구청장에게 요청한【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보고서 또는 복명서 및 건축주에게 진행한 행정처분 관련 공문 일체】의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건임
6. 주요내용	본 심의는 아래 사유로 기각함. 청구 내용은 위반건축물의 적발·조사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자료로서, 공개될 경우 관계인의 조사·단속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, 성명·연락처 등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반건축물의 소재지 및 위반내용 등을 통해 건축주를 특정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, 제3자인 건축주 역시 비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, 청구 내용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함.
7. 회의결과	“기각(비공개)” - 심의위원 5명: 기각 4명, 인용 1명